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7일

예 천 군 수



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인명 및 시설물 등에 안전사고와 재산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주민의견 수렴 주요내용

가. 행정예고 기간 : 2024. 5. 7. ~ 2024. 5. 21. (15일간)

나. 의견제출 기간 : 2024. 5. 7. ~ 2024. 5. 21. (15일간)

다. 공고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ycg.kr>) 및 게시판

라. 관련근거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예천군청 안전재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4년 5월 21일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54-650-6159)

라. 제 출 처 : 경북 예천군 충효로 111(예천군청 안전재난과 4층)

마. 문 의 처 :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급경사지담당 ☎ 054) 650-6919

바. 처리방향 : 제출기한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지구명	위 치	등급 및 규모			지정 사유
		유형	등급	현황	
송월1지구	은풍면 송월리 산66-4	붕괴 위험 지역	D (71점)	H= 15m L= 94m S= 45°	재해위험도평가에 따른 표층붕괴가 관찰되고, 파괴 잠재성이 존재하여 대책공법 적용을 통한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함
용두1지구	효자면 용두리 산45-1	붕괴 위험 지역	D (64점)	H= 83m L=105m S= 48°	
용두3지구	효자면 용두리 산1-7	붕괴 위험 지역	D (69점)	H= 15m L=130m S= 50°	
도촌1지구	효자면 도촌리 산15	붕괴 위험 지역	D (61점)	H= 9m L= 65m S= 50°	
명봉N1지구	효자면 명봉리 408-1	붕괴 위험 지역	D (61점)	H= 8m L= 52m S= 55°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